

교무위원회 규정

- 제 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(조직)**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부총장, 각 처장 및 각 대학원장으로 한다.
② 서기 1인을 두며, 서기는 교무처장으로 보 한다.
- 제 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제 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칙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 2.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 3.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
 4. 학교 기획 및 건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 5. 이사회로부터 수입 받은 학사에 관한 사항
 6.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
- 제 5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회무를 통리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6조(회의소집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9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